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통상국내대책관

2015.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 i -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13,991	435,360	331,346	△104,014	△23.8
○ 국내전시회지원	7,381	6,794	5,398	△1,396	△20.5
○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	4,859	4,785	5,258	473	9.9
○ 지역전문가육성및공급	4,062	2,936	2,696	240	△8.2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0	1,100	971	△129	△11.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008	220,451	234,394	13,943	6.3%
○ 중소기업기업수출 경쟁력강화	40,581	54,294	52,629	△1,665	△3.1%
○ 무역보험기금출연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7,381	6,794	5,398	△1,396	△20.5

* 사업코드 : 19 - 11 - 00 - 110 - 113 - 1100 - 1131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윤갑석), 무역진흥과장(이경호, 044-203-4030), 사무관(최준근, 40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정책보조)
사업시행주체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여 우리 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 3,660백만원

- 산출내역 : Global TOP 전시회 700백만원 + 유망전시회 2,900백만원
+ 합동·통합전시회(인센티브) 60백만원

② 전시산업 기반육성사업 : 1,738백만원

- 산출내역 : 국제협력사업 240백만원 + 전시산업 정보화사업 160백만원
+ 전시산업 홍보사업 : 280백만원 + 국내전시사업자 육성사업 500백만원
+ 국내전시회 평가관리사업 55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시회는 WTO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 강화 추세
- 무역전시회는 유력 바이어와 수출상담이 가능한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을 제공하여 수출마케팅에 가장 효율적
 - * 독일의 경우 총 무역거래중 60 ~ 70%가 전시회를 통해 성사
국내전시회의 경우 국고지원 1억원당 연평균 약 80백만불의 수출 창출효과
- 전시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 * '13년 KINTEX 방문객 소비규모는 4,525억원(고양시 1년 예산규모(약 1조 4천억원)의 약 32% 크기), 서울모터쇼 방문객 소비규모 202억원(신한카드)
 - ** 전시산업 생산유발효과 2조 9,872억원, 고용유발효과 17,007명('14년)
 - *** MICE 관련 해외참가자 1인당 지출액(\$2,585)은 일반 관광객(\$1,409)의 2배 수준이며 해외바이어 1명 유치 시 21인치 컬러 TV 24대, 3명 유치 시 1500cc 승용차 1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관광공사)
- 세계 각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지원 중으로, 국내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 지속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7,381	6,794	5,398	Δ1,396	Δ20.5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5,769	5,069	3,660	Δ1,409	Δ27.8
▪ 전시산업 기반육성사업	1,612	1,725	1,738	13	0.8
□ 비목	7,381	6,794	5,398	Δ1,396	Δ20.5
▪ 민간경상보조(320-01)	7,381	6,794	5,398	Δ1,396	Δ20.5
▪ 민간자본보조(320-07)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등 우수전시회 육성
- 2020년 무역규모 2조불 달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우수전시회에 해외 바이어유치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 국내 주요 전시회의 해외홍보, 인력양성, 전시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 무역전시 기반구축사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6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50.69억원(58개X0.87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17.25억원
'16	5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36.6억원(50개X0.73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17.38억원
'17	5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36.6억원(50개X0.73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19.18억원
'18	5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32.8억원(45개X0.73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19.63억원
'19	4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30.0억원(40개X0.75억원) ▪ 전시산업 기반구축 19.8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및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추진경위

- '98년 무역전시사업 육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지원('00년 10억원) 개시
- '04.6월 전시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확정·발표(경제장관간담회)
- '08.5월 글로벌TOP 전시회 육성 및 전시장 확충 필요성 대통령 보고(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1월 국내전시회, 상담회 등에 해외유력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방안 대통령 보고(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2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시행('08.9.22) 및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5년)' 확정·발표
- '10.6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 확정
- '14.8월 '제2차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5년)' 확정·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60.85	84.07	73.81	67.94	53.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84.07	-	-	84.07	84.07	-	-
	(84.07)	(-)	(-)	(84.07)	(84.07)	(-)	(-)
'14년	73.81	-	-	73.81	73.81	-	-
	(73.81)	(-)	(-)	(73.81)	(73.81)	(-)	(-)
'15년	67.94	-	-	67.94	67.94	-	-
	(67.94)	(-)	(-)	(67.94)	(67.94)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예산 산업위 검토의견

- 소액다건의 전시회 지원 지양. 동 지적에 따라 '14년 국고지원 전시회 선정 시 예산계획 대비 선정건수 축소

* ('13년 계획) 유망전시회 등 58개 선정 → ('13년 실제) 53개 선정

○ '14년 예산 산업위 검토의견

- 해외바이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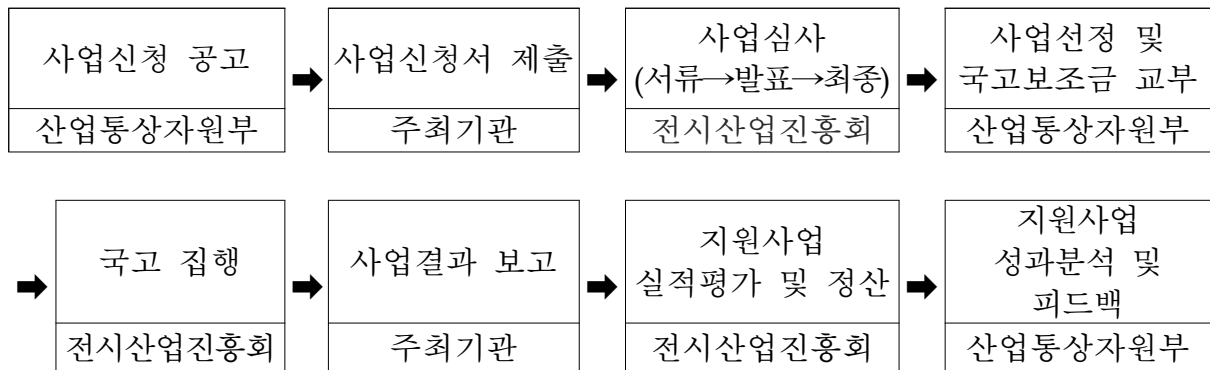
* 동 지적에 따라 '15년 전시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해외바이어 DB 관리와 주최자의 해외업체 유치지원을 목적으로 '전시주최자 해외업체 유치지원사업' 신설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무역전시회 지원은 무역촉진활동으로 분류되어 WTO 체제 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국 가	지 원 내 역
홍 콩	매년 교역신고부담금에서 얻은 수익금을 일종의 지원금 형태로 준정부기관인 HKTDc에 교부하여 동 기관이 연 130억원 수준의 국내전시회를 개최지원
대 만	국내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하여 건강검진 보조, 숙박 및 항공 운임 제공
영 국	산업부에서 전략적 육성산업을 위한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의 1/2을 지원하고 관련업체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독 일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AUMA(독일전시협회)를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미 국	국내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상무부 FCS 조직을 활용, 전시회 홍보 및 바이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프랑스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활동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전시회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
싱가포르	일류 국제전시 도시로 육성을 위한 IEC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인증 전시회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및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4,859	4,785	5,258	473	9.9

* 사업코드 : 21-11-0-110-113-1100-1133-5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윤갑석), 무역안보과(박종배, 044-203-4050), 사무관(이희동, 40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04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전략물자 취급 기업,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
지원조건	민간 보조
사업시행주체	전략물자관리원

2. 사업목적

-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 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의 국내 이행기반 조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효율성 확보
- 우리 기업의 불의의 피해를 적시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 무역안보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절실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 : 3,382백만원

- 인건비(연봉, 제수당 등) : 2,523백만원
- 기본운영비(사무실 임·관리비, 기타 관리비) : 859백만원

②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 351백만원

- (전략물자 판정)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172백만원)

* '14년의 판정건수는 '11년의 3배 이상 증가되는 등 판정 수요 급증에 따른 판정 처리 지체 및 수출지연 예방을 위해 외부자문 등 비용 확보 필요

- (우려국 안전거래 지원) 기업의 對이란 안전거래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란교역 非금지 확인서」 심사 및 발급업무(179백만원)

③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 422백만원

- (인프라 및 이행지원 도구 개발) 국가R&D과제 등의 전략기술 여부 사전 확인 및 전략기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행지원 도구 개발, 제도 정비 및 이행지원 등 기반 강화(362백만원)
- (전략기술 자율관리체계 구축)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전략기술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자율관리체계 구축 지원(60백만원)

④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 784백만원

- (CP 구축지원 및 제도 내실화)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구축과 정부의 CP 지정심사 및 제도 개선·운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60백만원)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조직, 규정, 절차 등 자율준수체제(CP)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
 - * 조직진단, 취급 전략물자 현황파악, 해외 거래상대방 분석, 내부 직원 교육, 사내규정 마련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CP 구축을 지원
- (중소기업 이행지원) 중소기업이 제도 미인지로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중 교육·홍보 및 컨설팅(458백만원)
 - * 자가판정 지원 DB구축 및 연계시스템 고도화(161백만원),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관 운영(120), 중소기업 센서스(100), 중소기업 컨설팅 운영(77백만원)
 - *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이행을 지원할 것”(13.8.19, 을지국무회의 VIP 지시사항)
- (전략물자 관리제도 교육·홍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이행유도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167백만원)
- (국내외 수출통제 현안 및 동향 조사·분석) 수출통제 국제동향 조사, 제도 분석 등 정책연구 및 정책제언,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22백만원)
- (전략물자 국제협력) 통제지침 결정 등 수출통제 국제규범 형성시 우리나라 입장 반영 및 해외 정부·기관과 공조 강화(77백만원)

⑤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 319백만원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전산자원 유지·관리(267),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보안 강화(52)

□ 지원 필요성

- (기관운영)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기업의 불법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
 - 정부가 수행할 업무중 판정, 조사·분석, 교육·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위탁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
 -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질서로 급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원의 기관운영 지원 절실
- (사업수행)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위탁사업 추진재원의 적기지원 필요
 - 특히, 전략물자 판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또한,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컨설팅, 자가판정시스템 고도화 등 이행지원 관련 예산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4,859	4,785	5,258	473	9.9
▪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	2,769	2,920	3,382	462	15.8
▪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331	351	351	-	-
▪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447	422	422	-	-
▪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913	773	784	11	1.4
▪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309	319	319	-	-
☐ 비목	4,859	4,785	5,258	473	9.9
▪ 민간경상보조	4,854	4,785	5,258	473	9.9
▪ 시설장비유지비	5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물자관리 기반 강화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수출관리체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전략기술 관리체제 고도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원활한 기술거래 기반 구축
 -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행부담 경감 및 정책지원 강화

○ 고객중심의 전략물자관리 체계 고도화

- 전략물자 판정의 정확성 강화, 판정결과 적기 제공 등 신뢰도 제고
- 전략물자 시스템 개선, 교육 저변확대 등 전략물자관리 인프라 고도화
- 교육·홍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등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52.58억원×1개×100%)
'16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52.58억원×1개×100%)
'17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52.58억원×1개×100%)
'18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52.58억원×1개×100%)
'19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52.58억원×1개×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

————— < 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

-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 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⑧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고도화

————— < 대외무역법 제28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란 비금지 확인서 심사업무 지원

< 對이란 교역 관련 우리 정부 대응현황 >

- UN안보리결의 1929호('10.6.9) 이후 미국 등은 기업에 이란 전략물자 수출 및 이란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우리나라도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제재조치를 발표('10.9.8)하고 이란 교역·투자 및 대금결제 업무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하는 「교역·투자 非금지확인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 가능

○ 추진경위

- 9.11테러 이후 국제 규범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이행 사업으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

* UN안보리결의1540호('04.4.28)에 의거 모든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의무화(수출자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및 수출허가 절차 의무화)

< 주요 추진사항 >

- '93년 : 전략물자 국내수출통제제도의 도입
- '95년~: 국제 비확산수출통제체제 가입
 - * 핵공급그룹('95), 바세나르체제('96), 호주그룹('96), 미사일기술통제체제('01)
- '01.09 : 미국 9.11테러로 국제수출통제제도 강화
- '03.12 : 전략물자 HS코드화 등 우리나라 수출 통제체제 정비 및 이행체제 마련
- '04.01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사업 최초 수행
- '04.08 :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설
- '07.06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으로 법인화
- '08.02 :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기부 전략기술관련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
- '09.10 : 전략기술 사전판정 등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
- '09.12 : 한전컨소시움, UAE 원전건설 최종사업자로 선정
- '10.09 : 기재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對이란 제재 조치 발표
- '14.01 :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가 강화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35.60	40.09	48.59	47.85	52.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0.09	-	-	40.09	40.09	-	-
	()	()	()	()	()	()	()
'14년	48.59	-	-	48.59	48.59	-	-
	()	()	()	()	()	()	()
'15년	47.85	-	-	47.85	47.85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13년 예산심사) 국가R&D과제가 불법이전에 연루될 경우 국가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예산 10억 증액 필요(예결위 권성동 의원, 지경위 이강후·이채익 의원)
- (2014년 예산심사) 중소기업 전략물자 제도 이행 지원, 전략물자 판정 처리를 위해 예산 8억 증액 필요(산업위 이채익 의원)
- (2014년 예산심사) 판정수요 폭증 및 중소기업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정인력 증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증액 필요(산업위 이강후 의원)
- (2014년 국정감사)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충원을 위한 투자 필요(산업위 박완주 의원)
- (2014년 국정감사) 제도 홍보 및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필요(산업위 홍지만 의원)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3년 예산에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예산 반영(보조금 0.73억원) 및 사전확인 심사 인력(2명) 증원
- '14년 예산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반영(정부 보조금 4.78억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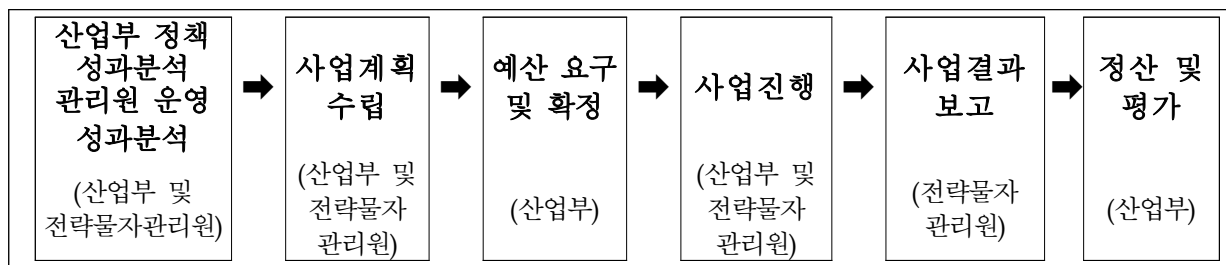
○ 재정사업자율평가('15년) : 매우우수(90.0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정부조직에서 수출통제 업무 수행

국가	담당부서	담당인원	수출규모 (억불)	수출허가 신청건수	예산
미국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등	BIS 393명	('13)15,796	('13)24,782 (BIS)	11,381만불 ('14년, BIS)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ECO 외무성 비확산국 국방부	ECO 77명	('13)4,958	('13)13,726	약300만파운드 ('11년, ECO)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내 2개 부	BAFA* 295명 *총 5개 부	('13)13,657	('13)56,600	5,215만유로 ('13년, BAFA)
한국	산업부(1개과, 방사청, 원안위, 통일부	무역안보과 8명 *전략물자관리원 38명	('14)5,727	('14)4,819	48.54억원 ('14년, 산업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 배경

-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는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¹⁾)를 결성하여 첨단무기 및 기술의 공산권 유입을 통제('49~'94)
- 脫냉전 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대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

【 국제 수출관리 체제('14.12월 기준) 】

국제체제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회원국	발족연도	한국가입
핵공급국그룹 (NSG)	핵 무기 (원자력전용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241종)	48개국	1978년	1995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219종)	42개국	1985년	1996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185종)	34개국	1987년	2001년
바세나르체제 (WA)	재래식 무기 (군용물자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759종)	41개국	1996년	1996년

- 9.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²⁾)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으로 등장했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WMD 비확산의 주요수단으로 부상

□ 국제규범화 동향

- UN안보리결의(1540호, '04.4)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국제 규범화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의무화

* UN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1718호('06), '1874호('09), 2087호('13)), 이란(1737호('06), 1747호('07), 1803호('08), 1929호('10)) 등 11개국 제재 중

1) 對공산권수출관리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2)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생화학무기·핵무기 등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참고 2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

□ 개 요

- '87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협약에 모두 가입

* 가입년도 : NSG('95), AG('96), WA('96), MTCR('01), BWC³⁾('87), CWC⁴⁾('97)

-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05.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07.6) 등 지원체계 마련

* Yestrade는 전략물자 판정, 허가심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효율적 이행에 기여

□ 수출통제 제도 주요내용

-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 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 국내 수출관리 관련 부처 현황 】

소관부처	근거법령	통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이중용도용품(Dual-Use)
	방위사업법	일반 방산물자
방 위 사 업 청	대외무역법 · 방위사업법	주요 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전용품목
통 일 부	남북교류협력법	北韓 반출입 물품

□ 운영 현황

- 정부는 정책방향 결정 및 수출허가업무를 수행하고, 판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
- 온라인시스템(Yestrade)으로 통일부·방사청·관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에게 수출관리규범 이행편의 제공

3)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한 국제조약

4) 화학무기금지조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

참고 3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관련 처리현황

□ 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품목 판정	자가판정	8,614	9,491	11,912	18,001	34,943
	· 해 당	1,160	3,088	1,705	3,292	2,706
	· 비해당	7,454	6,403	10,207	14,709	32,237
	사전판정	3,701	4,108	7,333	12,950	14,593
	· 해 당	483	465	1,491	2,504	2,088
	· 비해당	3,218	3,643	5,842	10,446	12,505
수출 허가	허가심사	2,207	2,821	3,633	4,151	4,123
	· 허 가	1,977	2,783	3,596	4,139	4,106
	· 반 려	227	37	37	12	17
	· 거 부	3	1	0	0	0

* 註 : 1. 반려사유는 주로 非전략물자, 서류미비(보완요청), 타부처 소관(이관) 등
2. 실적에는 일반방산물자 처리현황 포함

□ 이란교역 및 투자비금지 확인서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① 신청서 접수	15,036	16,787	18,675	17,046
· 화학	8,464	9,927	10,128	7,477
· 기계	3,012	3,003	3,401	4,560
· 소재	2,335	2,220	2,898	2,949
· 전자	1,225	1,637	2,248	2,060
② 신청서 처리	14,497(11)	15,877(3)	18,093(83)	16,127(12)
· 화학	8,162(3)	9,516(1)	9,864(10)	7,081(9)
· 기계	2,965(7)	2,739(0)	3,310(54)	4,404(3)
· 소재	2,205(0)	2,072(1)	2,803(19)	2,717(0)
· 전자	1,165(1)	1,550(1)	2,116(0)	1,925(0)
③ 민원 상담	1,675	2,206	2,610	3,286
· 전화상담	1,662	2,176	2,574	3,234
· 방문상담	13	30	36	52

참고 4 전략물자관리원 현황

□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제29조

□ 주요경과

- '04. 8. 30,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소
- '06. 12. 8, 설립 근거법(대외무역법) 국회 의결
- '07. 6. 5,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 설립배경

-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관리가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부상
-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설립

□ 직제 및 정원 : 2본부 6팀, 43명

□ 주요기능

-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의 지원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 예 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13	'14	'15	항 목	'13	'14	'15
1. 정부보조금	4,005	4,854	4,785	1. 인사제비	1,933	2,013	2,149
2. 기타 수탁사업	528	952	213	2. 경상운영비	756	756	771
3. 기타 수입	50	50	142	3. 사업비	1,894	3,087	2,220
합 계	4,583	5,856	5,140	합 계	4,583	5,856	5,140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62	2,936	2,696	240	△8.2

* 사업코드 : 19 - 11 - 0 - 113 - 1100 - 1134 - 302

* 담 당 자 : 무역정책국장(윤갑석), 무역정책과장(조영태), 사무관(양해구)

* 국정과제 : 5-1(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참여 대학생 700여명 및 652개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이상 Matching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 육성

* GTEP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3. '16년 예산 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무역실무 교육비 지원 : 무역실무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현장실무 컨설팅교육 등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 사업비 1,336.4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무역실무 교육 및 현장컨설팅 교육비 : 616.4백만원

- 기본 교육비 : 350백만원 (50만원×700명)
- 심화 교육비 : 120백만원 (10만원×50시간×24개 대학)
- 현장컨설팅교육비 : 146.4백만원(61만원×10개월×24개 대학)

- * 기본교육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인성 등(50시간) 교육
- * 심화교육 : FTA, 전자상거래, 취·창업 특강 등
- * 현장실무컨설팅교육 : 사업단별 전담 컨설턴트가 산학협력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수출마케팅 현장실무 교육
- 사업단 교육현장 지원비 : 720백만원(3,000만원×24개 대학)
- * 24개 사업단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운영 소요비용

- 해외지역특화 교육비 지원 : 해외특화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비 **38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382백만원(10만원 × 160시간 × 24개 대학)

- * 해외특화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언어, 이문화 상관습, 해당지역 비즈니스 매너 교육, 진출 성공사례 연구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지원 :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 해외특화지역 중심 수출마케팅 현장실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78.6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978.6백만원(139.8만원 x 700명)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5-1 "중소·중견기업 역량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전자상거래, 복합무역의 확산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선진형무역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652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필요

-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지원, 국내외무역현장마케팅실습 등 실무교육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함
- 특화지역의 언어, 상관습, 상문화 등 지역전문지식 및 산업(품목)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역 전문가 양성**
 - 지역 상관습, 기본언어, 관세 및 각종 수출입 제도, 문화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및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시행
 - 산학협력 기업의 특화 지역 진출을 위한 현장 마케팅 실무 강화 및 확대
- 현재 대학에서는 무역이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 참여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이 접목된 교육 실시
 - 특히, 지방소재 대학생들에게 **무역관련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인턴들을 파견하여 수출관련 업무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 유도 및 현재까지 **해외전시회 참가 등 무역 실습을 통하여 3,024만 달러('07~'14 실적)의 수출실적 달성**
- 그러므로 무역환경변화에 맞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FTA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축진을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 참여대학 현황 >

권역	대학수	참 여 대 학 교
서울권	2	건국대, 숭실대
수도권	4	단국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용인)
강원권	1	강원대
충청권	5	남서울대, 순천향대, 청주대, 충북대, 한남대
경상권	7	계명대, 동국대(경주), 신라대, 영남대, 영산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전라/제주권	5	광주대, 목포대, 전북대, 제주대, 호원대
계	24	

* 참여 24개 대학 중 지방대학이 18개 참여하여 75% 차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62	2,936	2,696	240	△8.2
▪ 지역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400	-	-	-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양성(GTEP)	3,262	2,936	2,696	240	△8.2
▪ 지역마스터 과정	400	-	-	-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4,062	2,936	2,696	240	△8.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내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산업·지역전문성을 갖춘 **융합형·현장중심형 무역인력의 양성 및 공급**
 - 기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지역전문가 육성사업인 지역특화 사업으로 개편
 - * '14년 5개 대학(130명)→ 15년부터 24개 전 대학(700명)으로 확대
- 특히, **지방소재 대학을 확대**하여 많은 지방대생들에게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에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한 무역관련 교육기회 제공 및 취업지원
 - * 서울소재 대학 축소 : '14년 3개 대학 → '15년 2개 대학 (△1)
- 향후 FTA,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확산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대학별 맞춤형 현장실습 커리큘럼의 도입 등을 통해 지역전문가양성사업의 내실화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 14.32(60x24개 대학) ▪ 지역특화 : 3.8(0.16x24개 대학) ▪ 현장실습비 : 11.2(0.016x700명)
'16	2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 13.36(55x24개 대학) ▪ 지역특화 : 3.8(0.16x24개 대학) ▪ 현장실습비 : 9.8(0.014x700명)
'17	3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 14.32(60x24개 대학) ▪ 지역특화 : 5.0(0.21x24개 대학) ▪ 현장실습비 : 13.3(0.019x700명)
'18	3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 14.32(60x24개 대학) ▪ 지역특화 : 5.0(0.21x24개 대학) ▪ 현장실습비 : 13.3(0.019x700명)
'19	3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 14.32(60x24개 대학) ▪ 지역특화 : 5.0(0.21x24개 대학) ▪ 현장실습비 : 13.3(0.019x700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③항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①항

①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5-1(“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13.1.28)

• 국정과제 5-1 “중소·중견기업 역량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 ‘00. 7월 :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 ‘01. 9월 : Trade Incubator 사업 추진

- ‘07. 7월 :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폐지 및 Trade Incubator 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개편

- ‘08. 3월 :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포함

- ‘13. 1월 : 지역전문가양성사업 국정과제 포함

- ‘14. 7월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개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40.87	32.62	40.62	29.36	26.9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2.62	-	-	32.62	32.62	-	-
	(32.62)	(-)	(-)	(32.62)	(32.62)	(-)	(-)
'14년	40.62	(-)	(-)	40.62	40.62	(-)	(-)
	(40.62)	(-)	(-)	(40.62)	(40.62)	(-)	(-)
'15년	29.36	(-)	(-)	29.36	29.36	(-)	(-)
	(29.36)	(-)	(-)	(29.36)	(29.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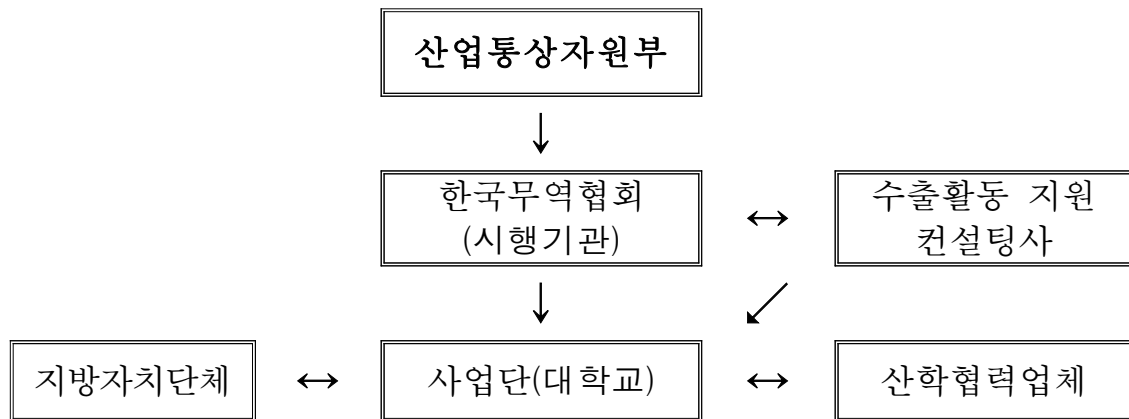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호 주 : 무역 또는 관세관련 특성화 대학 존치
- 중 국 :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등 전문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
- 네덜란드·홍콩·대만 :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무역인력
양성사업 추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 고 1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개요

□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필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를 육성

* GTEP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 개 요

○ 교육인원 : 약 700명, 대학교 2~3학년(각 대학당 25명 이상)

○ 교육기간 : 1년 3개월(현재 제8기 추진중, 2014. 9. 1 ~ 2015. 9. 30)

* 기존 사업기간이 국회 결산시점과 불일치하여 실효성이 있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지적(산업위 지적)하여 9기 사업부터 '05'1.1~'06.3.31일로 사업기간을 조정

○ 교육내용

- 기본·심화교육, 실무컨설팅교육, 무역현장마케팅실습 등 총 420시간 이상

<9기 GTEP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세부교육	교육시간	학점	교육기관	내 용
기본교육	온라인교육(사전)	35	3	무역 협회	수출입개요 및 마케팅실무
	집체교육	25			현장실무, 기본소양, 특강
	소 계	60	3		
심화교육	지역특화과정	90	3	대 학	어학, 이문화상관습, 시장진출전략 등
	정규과정	90	6		전공과목
	특별과정	50			전자상거래, FTA, 취업/창업 특강
	소 계	230	9		
실무컨설팅교육	현장실무컨설팅	30	-	*(주)EC21	마케팅 실무 교육, 산학협력 컨설팅 해외시장진출전략 보고서
무역현장 마케팅실 습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100시간 이상	3	대 학	산학협력체결, 업체현장마케팅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등
합 계		420이상	15		

○ 전국 5大 권역별(8개 특화지역) 24개 대학 선정(35개 대학 신청)

* 8개 지역 : 중화권(8), 동남아(5), 중앙아(3), 인도(2), 유럽(2), 중남미(2), 중동(1), 아프리카(1)

<제9기 24개 참여대학 현황>

지역구분	대학수	대학
서울	2	건국대(중화권), 숭실대(유럽)
수도권	5	강원대(동남아), 단국대(중화권), 인하대(중앙아), 한국산기대(중남미),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동남아)
충청권	5	남서울대(중화권), 순천향대(동남아), 청주대(중남미) 충북대(인도), 한남대(동남아)
전라권	5	광주대(중화권), 목포대(중화권), 전북대(중화권), 제주대(중화권), 호원대(아프리카)
경상권	7	계명대(중화권), 동국대(경주/중앙아), 신라대(동남아), 영남대(중동), 영산대(인도), 인제대(중앙아), 해양대(유럽)
합 계	24	

□ 지원금액 및 기간

- 총 사업비는 **2,936백만원**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심화교육비, 현장실습비 등 매 기수 평균 **약 110백만원**씩 3기수 간 지원

* 1기수는 매년 1.1 다음해의 3.31일까지(15개월)

참 고 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주요성과

- '07년부터 현재까지 6,900명 여명의 무역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취업률은 정규직으로 68.9% 및 참여 학생들이 해외전시회 참가 등 무역실습과정에서 수출실적도 3,024만 달러를 달성하였음

<주요 사업 실적>

기 수	기 간	대학 (개)	참여 인원 (명)	이수율 (명, %)	취업률 (%)	산학협 력 (개사)	수출실 적 (만불)
1	'07.7~'08.12	19	805	493 (61.2%)	64.0	384	163
2	'08.7~'09.12	17	629	389 (61.8%)	65.3	196	253
3	'09.7~'10.12	25	888	618 (69.6%)	77.7	252	333
4	'10.7~'11.12	24	853	661 (77.6%)	76.2	351	375
5	'11.7~'12.12	24	817	677 (82.9%)	67.2	541	388
6	'12.7~'13.9	24	757	652 (86.1%)	60.8	622	459
7	'13.7~'14.9	24	776	684 (88.1%)	59.4	652	518
8	'14.7~'15.9	24	745	676 (90.7%)	-	656	535
9	'15.1~'16.09	24	701	진행중			
계			6,970	4,850 (77.4%)	68.9*	3,654	3,024

* 전체 취업률(68.9%, '15.4월 기준) : 취업대상자 2,414명 중 1,663명 취업.

- 중소기업 해외진출 장벽, GTEP 학생과 연결하여 7년간 실적 2,500만달러 달성
 - 매출 50억원대 화장품 중소기업 SA 코스메틱은 인하대 GTEP 참여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1년여 만에 태국 300만달러 수출계약 달성
 - 기와 제조 중소기업 페루프는 영남대 GTEP 사업단과 미국 박람회 참가하여 35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
 - 헤어 화장품 전문업체 새롬코스메틱은 건국대 GTEP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1년만에 중국 화장품 위생 허가증 취득

<조선일보, 2015-04-28>
- 8년간 800만 달러 계약, 광주대는 수출 전진기지
 - 광주대 4학년 송다인 : '13.9월 스페인의 한 주방용품 업체와 60만 달러 수출 계약
 - 광주대 GTEP 지난 8년간 150여 차례의 국내외 박람회와 수출상회 참가해 800만달러의 수출 계약 체결
 - 루바니(의류가방), 그린라이프(허브), 해미로식품(해조류) 등 국내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앙일보, 2015-02-13>
- 인제대 GTEP 아시아기계류 무역사절단에 참여해 5억 1천여만원 수출 실적 달성으로 경남도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에 맹활약
 - 인제대 3학년 김민정 : 자동차 에어컨컨프러셔 생산하는 JYC 기업에 파견되어 말레이시아에 40만달러 제품 계약
 - 인제대 4학년 박진희 : 수액패치 제조하는 KJI공업에 파견되어 태국에 10만 달러 수출 실적 주도

<한국경제, 2014-04-11>
- 샴푸 2만통 일본에 수출
 - 건국대 GTEP 교유선씨의 지원으로 직원 10명의 중소기업 (주)한방명가는 일본 오사카 유통업체인 산스이통상에 샴푸 2만통 수출 계약 성사

<매일경제, 2010-06-17>
- 한국해양대 현경길 (Konet Express Freight gmbh 취업(해외))
 - 독일 Konet Express Freight gmbh에서 인턴십 수료
 - GTEP 활동을 통한 실무 업무 경험 → 인턴 완료 후, 동 기업 취업
- 한국외대 GTEP 6기 김상민 (포스코 취업)
 - 한국전력 필리핀 법인에서 인턴십 수료
 - 인턴 시 해외영업, 경영지원 직무 수행 및 기업의 SCM을 경험
 - 2015년 3월 포스코 해외영업팀 취업

대한상사중재원 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1,100	1,100	971	△129	△11.7

* 사업코드 : 19-11-00-110-113-1100-1136-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윤갑석), 무역정책과장(조영태), 주무관(심현준, 044-203-40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클레임 해결목표 13,750건(중재 385건, 알선 및 상담 13,365건)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2.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클레임과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중재, 알선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분쟁예방 및 해결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클레임 해결 서비스 지원 :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국제분쟁 해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971백만 원

① 중재사업 지원비 : 820백만 원

- 중재판정비 등 : 355백만 원
- 심리개최 등 중재절차진행 : 155백만 원
- 중재제도 홍보 및 절차이용안내 : 180백만 원
- 전산시스템 관리·개선 : 130백만 원

② 알선·상담사업 지원비 : 151백만 원

- 알선상담 등 절차진행 : 140백만 원
- ADR 네트워크구축 : 11백만 원

※ 중재사업지원비 :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족액 169만원×385건)+전산구축 300백만원 [2015년]
→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족액 179만원×385건)+전산유지보수 130백만원 [2016년]
※ 알선상담사업지원비 : 알선상담 1건 11천원×13,320건 [2015년]
→ 알선상담 1건 11.3천원×13,365건 [2016년]

□ 지원 필요성

- 중재는 무역클레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법원의 재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인 법정제도
 - 무역클레임 발생시 양국간 법제도 차이, 송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를 통해 해결
- 중재·알선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해결비용 절감
 -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법원의 3심제인 소송에 비하여 단심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므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중재와 소송비용 비교 >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중재관리요금	소송비용	
		1심	3심
1천만원	45	110	406
2천만원	90	155	609
3천만원	135	230	841
5천만원	225	321	1,246
1억원	450	546	2,259
2억원	850	946	4,059

- 무료 알선 및 상담을 통한 소상공인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유도로 불필요한 법률비용 경감

- 중재 및 알선상담사업의 공익성에 기인한 국고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내지 영세자영업자임
 - 전체 중재건의 약 60%가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소액사건
 -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공공재적 기능을 지님
 - 중재, 알선 및 상담의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절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수적임
- 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업수입(중재수수료) 증대는 한계가 있고, 공공재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0	1,100	971	△129	△11.7
▪ 중재사업지원비	950	950	820	△130	△13.7
▪ 알선상담사업지원비	150	150	151	1	-
☐ 비목	1,100	1,100	971	△129	△11.7
▪ 민간경상보조(320-01)	1,100	1,100	971	△129	△1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중 등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무역분쟁 증가에 대비
 - 소액중재사건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분쟁 애로 해결에 기여
 - * 중재의 약 60%가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중소상공인 관련 사건

-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 중재사건처리기간 단축으로 클레임 비용 경감 추진

○ 범국민적인 분쟁해결·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존의 무역 분야 등의 중재서비스 증진과 함께 ISD 관련 투자 중재, 금융 등 중점육성분야 관련 분쟁해결 역량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사건 처리비용 : 6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9만원 × 385건)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천원 × 13,300건) 전산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시스템연계작업)
'16	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사건 처리비용 : 82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79만원 × 385건 + 전산유지보수 130백만원)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1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3천원 × 13,365건)
'17	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사건 처리비용 : 728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84만원 × 395건)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75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3천원 × 13,380건)
'18	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사건 처리비용 : 699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70만원 × 410건)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천원 × 13,400건)
'19	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사건 처리비용 : 672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58만원 × 425건)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35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0천원 × 13,430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중재법 보칙 제40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재법 보칙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66. 3 :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창립
- '70. 3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 '80. 8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 '93년부터 국고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대한상사중재원지원	8	11	11	11	9.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2013년)

○ 국회 예결위 김태원의원 서면질의(2014년)

- 중재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 추가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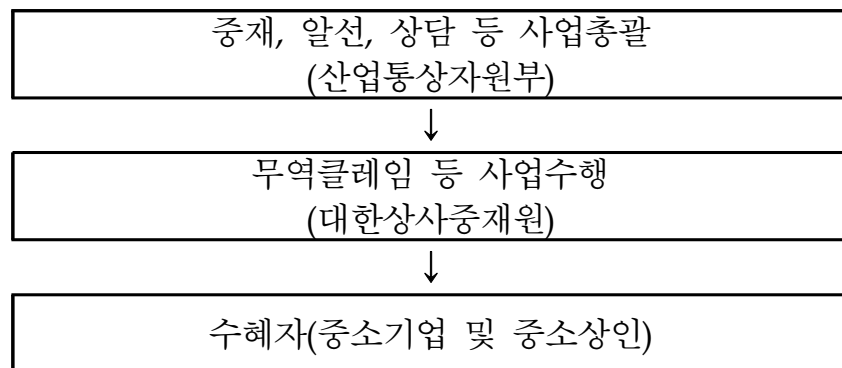
○ 국회 산업위 이진복, 김한표의원, 예결위 김한표, 강창일의원 서면질의(2015년)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사업의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고, 신규 FTA 체결에 의한 중소기업 무역분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추가지원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 싱가포르 정부가 건립한 복합건물(맥스웰챔버스)에 입주(4백억원 투입)
 - * '10년 신규건물 입주 후 중재사건 지속적 증대, '12년 200건 최초 돌파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 홍콩정부 소유건물(홍콩국제금융센터)에 입주
 - 연간 임대료 무상지원(1원) 및 최근 임대면적 2배 확장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사무부 산하 기관
 - 2013년 중재사건 : 1,256건, 재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보조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클레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10	'11	'12	'13	'14
중 재	316	323	360	338	382
알 선	801	915	938	916	916
상 담	8,645	11,339	11,500	11,697	12,783
합 계	9,762	12,577	12,798	12,951	14,081
증가율(%)	20	29	2	1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008	220,451	234,394	13,943	6.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윤갑석), 무역진흥과장(이경호, 044-203-4030), 사무관(김희석, 40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수지차보전)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 인력유치 지원을 통하여 수출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 바이어찾기, 무역사절단, 전시회, 현지법인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 * 해외 마케팅 및 투자진출 컨설팅, 해외시장정보 수집·설명회 개최 등
 - 외국인 투자유치
 -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 기(既) 진출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조직망운영비 : 63,907백만원

- KOTRA 해외 무역관 126개소 및 국내 조직망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
 - 63,907백만원('15) → 63,907백만원('16)

① 임차료: 28,542백만원('14년) → 28,557백만원('15년) → 28,557백만원('16년)

- 해외무역관 사무실 및 파견 직원 주택임차

* 사무실 : 총 126개

* 직원주택(본사파견) : 총 397명

구분	일본	중국	북미	아시아	유럽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계
무역관	4	19	10	21	23	14	10	15	10	126

② 기본사업비: 10,526백만원('14년) → 10,726백만원('15년) → 10,726백만원('16년)

- 통신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바이어 접촉경비, 샘플통관료, 자료수집비, 공용차량유지비 등 무역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③ 지원사업비: 24,324백만원('14년) → 24,524백만원('15년) → 24,524백만원('16년)

- 현지직원 법정고용주세, 의료비, 교육비, 부임교체비, LA관옥 운영, 유관기관 파견입주, 해외무역관 감사 등

④ 국내조직망운영: 100백만원('14년) → 100백만원('15년) → 100백만원('16년)

- 인천공항사무소 임차료, 관리비 등 기본운영비

② 인건비 : 103,595백만원

- 정규직(805명), 별정직(130명), 별도정원(6명) 및 현지직원(526명) 등 총 1,467명에 대한 인건비
 - 92,372백만원('15) → 103,595백만원('16) : (전년대비 +11,223백만원)

- '15년 Base 산출내역 (※국고(92,372) + 자체수입(294) : 총 92,666백만원)

① 국내급여 : 48,874백만원

- (정규직) 국내 및 해외근무 정규직 직원의 기본연봉(755명) : 45,060백만원
 - 임원 : 105백만원 X 7명 = 738백만원
 - 1직급: 83백만원 X 60명 = 4,982백만원
 - 2직급: 72백만원 X 160명 = 11,544백만원
 - 3직급: 63백만원 X 189명 = 11,944백만원
 - 4·5직급: 47백만원 X 339명 = 15,851백만원
 - * 직급별 대표등급의 기본연봉 X 인원수로 산정
- (별정직) 국내 별정직 직원의 기본연봉(82명) : 3,814백만원
 - 별정직 직원(6~9직급) : 47백만원 X 82명(인원수) = 3,814백만원
 - 별정직 인원 중 48명은 외국인투자 전문상담을 위한 민간계약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비로 지원

② 해외수당 : 19,445백만원

- 해외근무 정규직 직원의 해외 근무수당(410명)
- 해외 근무수당 및 특수지 근무수당은 직급 및 근무지에 따라 상이
 - 최근 4개년의 통화별 해외수당 집행액을 바탕으로 '16년 직급별 총 집행 예상액을 산출

③ 해외현지직원 : 24,347백만원

- 해외 현지직원 급여(526명)
 - 해외 현지직원(L3~L5직급) : 46백만원(전년 44백만원 대비 자연승호분 1.4% 및 임금상승분 3.8% 반영) X 526명(인원수) = 24,347백만원

- '16년 인건비 증액(11,223백만원) 세부 내역

○ 15년 대비 증감액 : + 11,223백만원

- '15년 증원인력 6개월분 (28명, 1,002백만원)
- '15년 연중 증원 12개월분 (31명, 1,839백만원)
- '16년 증원인력 6개월분 (19명, 429백만원)
- 법정보험료 비목변경 (경상비→인건비, 4,940백만원)
- 16년 공통인건비 인상률 (3%, 3,013백만원)

☞ ('15년 Base) 92,372 + ('16년 증액) 11,223 = (인건비 총액) 103,595백만원

③ 경상운영비 : 2,391백만원

○ 사옥관리,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비 내역 요약>

구 분		내 용
시설관리		·본사 사옥 및 IKP 종합시설관리(기계,통신,전기,소방,경비,청소) 회의실 운영, 식당 및 매점 운영 관리, 사무공간 조성
복리후생		·근무 직원의 보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 관 운 영	자산관리	·국내의 차량 및 비품의 구입, 임차, 수리 및 관리 ·업무용 차량운행, 운전원 관리 등
	문서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문서 통제/수발/보관/관리 등
	기타 지원사업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사내 보안, 경비 및 당직에 관한 사항 ·기타 의식, 행사, 민원, 등기 및 소송 관련 업무 등 ·조직문화, GWP(즐거운 일터 혁신)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 7,295백만원('15) → 2,391백만원('16)

▪ 증감 세부내역(△4,904백만원)

- 법정보험료 비목변경 (경상비→인건비, △4,940백만원)
- '14년 정부 경영평가 우수(A)에 따른 경상비 증액(+0.5%, 36백만원)

④ 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 11,870백만원

○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편성

▪ 11,870백만원('15) → 11,870백만원('16) : 전년대비 동결

⑤ 사업비 : 52,631백만원

○ 해외마케팅지원, 해외투자진출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해외정보 조사, 해외전문인력유치 등 사업비

▪ 45,007백만원('15) → 52,631백만원('16) : (전년대비 +7,624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 ① 해외마케팅지원 : 33,278백만원('15) → 37,851백만원('16)
- ② 해외투자진출지원 : 3,599백만원('15) → 2,720백만원('16)
- ③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3,624백만원('15) → 4,504백만원('16)
- ④ 해외정보조사 : 3,550백만원('15) → 6,600백만원('16)
- ⑤ 해외전문인력유치 : 956백만원('15) → 956백만원('16)

□ 지원 필요성

-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신흥시장개척,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KOTRA의 해외 수출마케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강화 필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해외진출촉진),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인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동반성장 협력의 생태계 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008	220,451	234,394	13,943	6.3
▪ 조직망운영비	63,492	63,907	63,907	0	0
▪ 인건비	86,813	92,372	103,595	11,223	12.1
▪ 경상경비	6,960	7,295	2,391	-4,904	-67.2
▪ 사업비	46,873	45,007	52,631	7,624	16.9
▪ 예비비	11,870	11,870	11,870	0	0
□ 비목(합계)	216,008	220,451	234,394	13,943	6.3
▪ 민간경상보조(320-01)	216,008	220,451	234,394	13,943	6.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기침체 타개 : 무역·투자성과 조기창출, 틈새시장 개척
-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고도화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전략적 투자 유치·진출, 글로벌 플랫폼 확충
- 세계경제 상생모델 구현 : 신흥시장과의 동반성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205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924, ▪ 사업비: 450, ▪ 경상운영비: 73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6	2,344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526,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7	2,289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471,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8	2,284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466,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9	2,284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466,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 1059호, '62.4.24 개정)
 - * '95.8.4개정(투자업무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 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 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 '09.4.22 개정(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

○ 추진경위

- '62년 무역진흥 등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한 이래 정부 지원
- '9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TPO)으로 출범
- '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 및 '99.10.26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 '02년 해외지역본부제를 출범, 8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인력을 전진배치하여 해외 현장지원인력을 보강
- '03년 Invest KOREA 출범, '04년 정보조사본부, '05년 전략마케팅본부, 고객지원본부 및 '07년 Global Korea를 각각 신설
- '06.10월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 결정
 - * KOTRA에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
- '08.1월 중기지원체제 일원화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VIP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08.5.16) 및 정부 방침 확정통보('09.5.30)에 따라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KOTRA로 일원화
- '08.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전문인력유치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KOTRA 內 「Contact KOREA」 설치·운영 방안 확정
 - * '0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개소
- '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09.10.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09.10.15)
- '11년 국가브랜드, 국제개발협력, 자원 및 에너지개발, 방산물자교역지원 기능 법제화('11.3.30)
- '14년 해외 전문인력유치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 법제화('14.1.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47	2,486	2,160	2,205	2,344

* '14년부터 국정과제(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분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예비비 및 불용사유('13년)
- 불용(1,600백만원) : 국가재정여건을 반영한 예산절감 1,600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486	-	-	2,486	2,700	-	-
	(2,486)	(-)	(-)	(2,486)	(2,700)	(-)	(16)
'14년	2,160	-		2,160	2,160	-	-
	(2,160)	(-)	(-)	(2,160)	(2,160)	(-)	(-)
'15년	2,205	-	-	2,205	2,205	-	-
	(2,205)	(-)	(-)	(2,205)	(2,20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 평가결과('11~'14)>

연 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2011	우수	우수	우수
2012	우수	우수	-
2013	우수	우수	-
2014	우수	우수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활동 확대 추세

<주요국 무역진흥기관별 국내외 조직 및 인원 운영현황 비교>

구 분		일본(JETRO)	한국(KOTRA)	홍콩(HKTDC)
인원	명	1,580	1,157	900
예산	연간(백만불)	435	212	257
	1인당(백만불)	0.28	0.18	0.29

(5) 사업추진절차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 보조금 예산요구(매년 4·5월) → 산업부 예산심의 및 조정(6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조정(7·8월) → 국회 심의·조정(10월) → 차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산업부 결산 심사(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결산 심사 및 확정(차년도 3분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40,581	54,294	52,629	-1,665	-3.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5

* 담당자 : 무역정책관(윤갑석), 무역진흥과장(이경호, 044-203-4030), 사무관(김희석, 40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2~계속(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정과제 분리)
총사업비	-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민간보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
 - **해외지사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
 - **해외전시회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육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로드맵(목표시장 심층분석, 타겟바이어 설정, 진출전략 제시)을 수립하여 수출마케팅 직접 수행
 -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 중소기업의 경제외교 활용 확산 및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1:1상담회, 네트워킹세미나 등 개최
 - **해외 전문가 활용 기술컨설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해외지사화 사업 : 15,180백만원

▪ 14,155백만원('15)→15,180백만원('16)

- (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과 신청기업이 1:1 매칭되어 수시로 업무연락 하며 수출과 관련된 기업 요청사항 지원
 -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직원 1인당 7개사까지 배정

<지사화사업 지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사 수(개사)	2,070	2,106	2,074	2,079	2,205	2,400	2,800
전담직원수(명)	275	283	300	300	322	352	382

- (산출내역) 15,180백만원(5.1백만원 x 3,000개사)

② 해외전시회 지원 : 21,949백만원

▪ 22,253백만원('15)→21,949백만원('16)

- (사업개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지원 (마케팅 및 행정서비스(임차, 장치, 운송 등) 지원)
 -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 이내 지원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한 후, 해당기업에게 소요경비 일부지원
 - * 기업당 700만원 한도내 임차료 및 운송비 등 직접경비 지원
- (산출내역) : 21,949백만원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19,329백만원 = 해외전시회 155회 x 124.7백만원)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2,620백만원 = 개별참가 500개사 x 5.2백만원)

③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육성사업 : 9,000백만원

▪ 10,386백만원('15) → 9,000백만원('16)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로드맵 (목표 시장 심층분석, 타겟 바이어 설정, 진출전략 제시)을 수립하여 수출 마케팅 직접 수행

* 지원대상 : World Class 300 기업, 글로벌전문후보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

- (산출내역) : 9,000백만원 (120개사 X 75백만원)

④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3,500백만원

▪ 2,700백만원('15)→3,500백만원('16)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외교 활용 확산 및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1:1상담회, 네트워킹세미나 등 개최
- (산출내역) 3,500백만원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해외) : 1,600백만원
 - 400백만원(1:1 상담회, 세미나 등 개최) x 4회
- 외국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내) : 400백만원
 - 50백만원(1:1 상담회, 세미나 등 개최) x 8회
- 후속사절단 파견 (해외) : 1,000백만원
 - 200백만원(후속상담회 등 개최) x 5회
- 해외유력기업 초청 후속상담회 (국내) : 200백만원
 - 50백만원(해외바이어 초청 후속상담회 등 개최) x 4회
- 참가기업 성과창출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 : 300백만원
 - 순방국가 지역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신규 바이어 정보 등 제공

⑤ 해외 전문가 활용 기술컨설팅 지원 : 3,000백만원

▪ (2,400백만원)('15)→3,000백만원('16) ('15년 사업 과목 이관)

-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 지원
- (산출내역) 125개 과제 × 24백만원 (정부출연금)
 - *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로 과제 수행비의 5% (약 150백만원) 활용
 - 기술지도,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 등 컨설팅 비용을 매칭* 지원하고 해외 전문가 관리, 기업-전문가 매칭을 위한 비용 부담
 - * 전체 과제수행 비용의 40%이상 기업이 현금으로 매칭하여 부담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성장동력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 고용창출 등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화 및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40,581	54,294	52,629	-1,665	-3.1
▪ 지사화사업	12,155	14,155	15,180	1,025	7.2
▪ 해외전시회지원	17,471	22,253	21,949	-304	-1.4
▪ 중견기업글로벌기업 육성사업	9,155	10,386	9,000	-1,386	-13.3
▪ 글로벌 마케팅인턴	1,800	1,800	0	-1,800	순감
▪ 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	3,000	0	-3,000	순감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	2,700	3,500	800	29.6
▪ 해외전문가 활용 기술 컨설팅 지원	-	0	3,000	3,000	순증
□ 비목(합계)	40,581	54,294	52,629	-1,665	-3.1
▪ 민간경상보조(320-01)	40,581	54,294	49,629	-4,665	-8.6
▪ 출연금(350-01)	-	(2,400)	3,000	3,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기침체 타개 : 무역·투자성과 조기창출, 틈새시장 개척
-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고도화 : 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글로벌 플랫폼 확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 142, 해외전시회 지원 : 222,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104 글로벌마케팅 인턴 : 18, 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30,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27
'1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 152, 해외전시회 지원 : 219,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5,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17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 152, 해외전시회 지원 : 217,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5,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18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 152, 해외전시회 지원 : 219,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5,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19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 152, 해외전시회 지원 : 215,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5,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059호, '62.4.24 제정)
 - * '95.8.4 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추진경위

- '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에서 국정과제로 분리 관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	-	406	543	5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시 국정과제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사업으로 분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406	-	-	406	406	-	-
	(406)	(-)	(-)	(406)	(406)	(-)	(-)
'15년	543	-	-	543	543	-	-
	(543)	(-)	(-)	(543)	(54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활동 확대 추세

(5) 사업추진절차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 보조금 예산요구(매년 4-5월) → 산업부 예산심의 및 조정(6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조정(7-8월) → 국회 심의·조정(10월) → 차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산업부 결산 심사(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결산 심사 및 확정(차년도 3분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무역보험기금출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무역보험기금출연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8 - 881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윤갑석), 수출입과장(나성화, 044-203-4040), 사무관(김대영, 40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9년 ~ 현재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0조원('14년말 무역보험 지원규모)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2. 사업목적

☐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융) 지원 및 플랜트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출연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 30,000백만원
- 산출근거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 플랜트, 자원개발 등 해외 유망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 제고

□ 지원 필요성

- 세계 교역 위축,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무역보험·무역금융을 통한 수출안전망 구축 필요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수
 -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조원): ('15) 44.5 → ('16) 46.5
- 발전·플랜트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는 수출자(시공사)의 금융조달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
 - 무보는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에 확실한 담보장치를 제공하며 수출자의 자금조달에 큰 기여
 - * 중장기성 보험 지원규모(조원): ('15) 16.3 → ('16) 18.4
-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으로 기금배수가 급등하여 기금건전성 악화
 - * 기금배수(배) : ('09) 50.7 → ('11) 90.3 → ('13) 86.6 → ('14) 67.4 → ('15^예) 71.5
 - 무역보험 지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기금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 무역보험기금출연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 출연금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 출연금(350)	140,000	145,000	30,000	△115,000	△79.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조원): ('15) 44.5 → ('16) 46.5

- 리스크관리 강화 및 기금출연 확대를 통해 기금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주력

* 기금배수(배) : ('09) 50.7 → ('11) 90.3 → ('13) 86.6 → ('14) 67.4 → ('15^o) 71.5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45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6	3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7	2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8	2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9	2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5. 고려사항

- 지원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1조

-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 제31조(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1992.7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 (2010.7월)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 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 무역보험기금출연	300	2,500	1,400	1,450	3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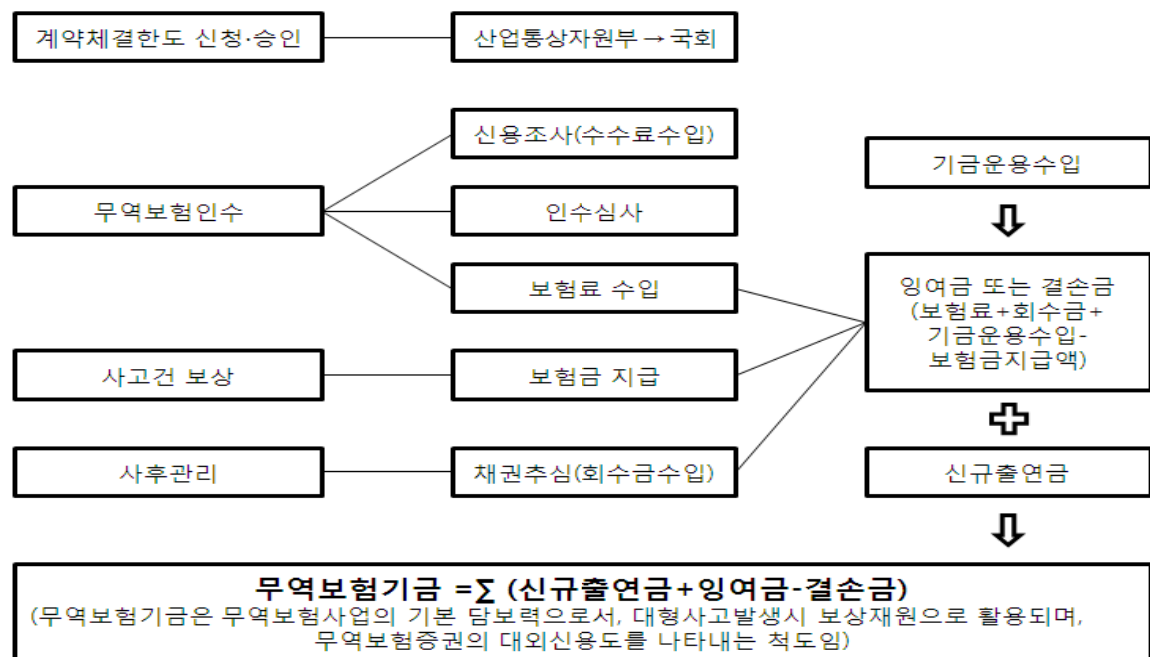
기 관 명	시기	지적·평가내용
기획재정부	'15년	'14년 기금존치평가 :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5년	'14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기획재정부	'14년	'13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존치평가 :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3년	'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13년	'12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2년	'11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수출입 및 금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재 64개국 75개 기관에서 운영
- 운영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국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사업으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등
전담 공기업 운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참고 무역보험법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755	2,660	2,369	△291	△10.9
○ 해외진출기반구축 (1933-301)	2,555	2,460	2,172	△288	△11.7
○ 남북산업자원협력 (1934-301)	200	200	197	△3	△1.5
<지특회계>	82,057	81,262	59,570	△21,692	△26.3
○ 투자유치기반조성 (4901-302)	82,057	80,512	58,895	△21,617	△26.8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4902-301)	-	750	675	△75	△10.0
총계	84,812	83,922	61,939	△21,983	△26.2

해 외 진 출 기 반 구 축 (계 속)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460	2,172	△ 288	△ 11.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3 - 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영삼), 해외투자과장(박진서, 044-203-4090), 사무관(김학송, 40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 해외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환경기반 조성·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해외진출기반구축 내역사업을 ① 해외진출기업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2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15년 (24.6억원) 대비 11.7% 감액(21.72억원)

- 그간 해외진출기반구축사업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세부목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15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에서 해외진출기반구축 및 M&A지원 2개 항목으로 일원화 필요성을 제시

* '15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 지원대상은 상이하나, 목적이 유사한 소액사업(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운영)을 해외진출기업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필요

- ① 해외진출기업 지원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투자 상담·컨설팅 제공 및 현지 법률·세무·노무 등 해외진출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성공적 현지 정착 및 내수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 960백만원(80백만원*12개 센터)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콘텐츠 확보 및 운영관리 인건비 등) 160백만원 + 기타 해외진출지원(해외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국내 해외투자상담센터 운영,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등) 280백만원

- ②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선진 경영자원(기술, 고객망, 브랜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에 대한 M&A에 대한 정보제공 및 M&A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77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금융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딜 소싱 440백만원(매물·매도기업 발굴, 포럼·간담회 개최, M&A 정보망 구독 등) + 법률회계 자문 및 컨설팅 비용지원 250백만원(25백만원*10개 기업) + Kotra M&A지원센터 운영비 8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 및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경영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애로해소**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외진출기업 신규법인 수('15.3월 누계) : 60,298개(대기업 13.7%, 중기등 86.3%)

**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Kotra, 매년),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정보, ▲현지 네트워크, ▲경영 애로해소 상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 건의

- 특히, 신흥국 진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마다 다양한 현지 법률·세무·노무·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문의·애로지원 수요 급증

○ 해외 M&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지원 수요는 많으나, 시장에서는 소규모 M&A딜을 기피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 해외 M&A 지원 성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중

* 국정과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글로벌역량 강화

* VIP말씀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적극지원”(해외진출성과확산토론회('14.12월), 중기간담회('13.12월)

[참고] 해외 M&A 주요 지원성과(누적 19건)

- D社 → 獨 ICT 인수('13년): 폭스바겐의 협력사로 생산의 80%납품(300억원)
- S社 → 伊 이녹스텍 인수('14년): 세계1위 강관제조업체 인수(1000억원)

- 기업은, M&A 유망매물 발굴, 회계·법률 실사 및 해외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애로*가 큰 상황으로, 정책 지원**을 희망

* 해외M&A애로조사(중기중앙회, '13): ①매물 등 정보부족(32%), ②회계·법률·현지실사 등 경험부족(30%). ③자금조달 애로(19%) 등

** 법무법인 등 민간 M&A 지원기관은 3천만\$ 이하 소규모 딜 기피(1억\$이상 수입)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460	2,172	△288	△11.7
○ 해외진출기업 지원	(1,745)	(1,660)	1,400 (80백만+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12개소+960백만+ 해외진출정보시스 템 운영 160백만+국내 상담센터 운영, 기관협력강화 등 280백만)	△260	△15.7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1,205	1,205 (80.3백만×15개센터)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업으로 통합 (‘15년 1,660백만원 → ‘16년 1,400백만원)	-	-
▪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220	220 (협의회운영 40백만+상담센터 운영52백만+애로 해소지원58백만+기관 협력강화70백만)		-	-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운영	160	160 (시스템유지보수95 백만+인건비45백만 +컨텐츠20백만)		-	-
▪ 글로벌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지원	160	75 (기업발굴10백만+ 마케팅교육20백만+기 업홍보 15백만 +창업지원30백만)		-	-
○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810	800 (해 외 딜 소싱 450 백 만+금융기관NW 구축 및 컨설팅 비용지원260백만+ 기타 운영비 90백만)	772 (해외딜소싱440백만 +법률회계 자문 및 컨설팅 비용지원250 백만(평균 25백만×10 개기업)+기타 운영 비 82백만)	△28	△3.5
□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460	2,172	△288	△11.7
▪ 민간경상보조(320-01)	2,555	2,460	2,172	△288	△1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해외투자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4.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05),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20),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160),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75),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800)
'16	21.7	▪ 해외진출기업지원(1,40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772)
'17	20.2	▪ 해외진출기업지원(1,324),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696)
'18	18.9	▪ 해외진출기업지원(1,263),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636)
'19	18.0	▪ 해외진출기업지원(1,216),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 운영(58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8조: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코트라에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6항: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 추진경위

- '07.2.28 :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07.12월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VIP 시연회('07.6.20)후 공식 오픈
- '09.10월 : 대외무역법 시행('09.4월)에 따라 KOTRA에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립
- '12.12월 : 해외 M&A 활성화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1월 : “해외 기업협업체 활성화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3월 : “해외 M&A 활성화” 보완대책 발표
- '14.3월 :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대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해외진출기반구축	22.5	25.6	25.6	24.6	21.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5.6			25.6	25.6		
	(25.6)	()	()	(25.6)	(25.6)	()	()
'14년	25.6			25.6	25.6		
	(25.6)	()	()	(25.6)	(25.6)	()	()
'15년	24.6			24.6	24.6		
	(24.6)	()	()	(24.6)	(24.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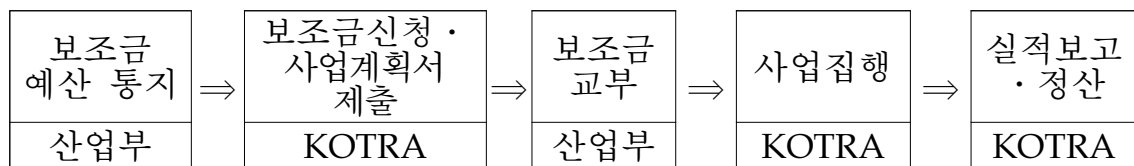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JETRO 및 JBIC의 해외투자기업 지원
 - 전액 정부출자 특수법인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하여 57개국 78개소 사무소 운영하고, 각 현지사무소 내 투자팀을 통하여 지역 전문가를 통한 현지투자상담, 지역투자설명회, 투자가이드 및 현지 투자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
 - 국제협력은행(JBIC)를 통해 해외 M&A 등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10조엔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 중

(5) 사업추진절차

-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 기본체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남북산업자원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남북산업자원협력	200	200	197	△3	△1.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900 - 1934 - 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영삼), 남북경협팀장(송현민, 044-203-4062), 주무관(박영희, 40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5·24조치('10.5.24)* 해제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산업·자원분야의 협력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 *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 남북경협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 등을 통한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제고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 : 27백만원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20백만원)
 - * 6회 × 3.3백만원 = 20백만원
 - 민간기업의 준비체계 구축 지원(7백만원)
 - * 2회 × 3.5백만원 = 7백만원
- ②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 : 170백만원
 -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촉진(90백만원)

* 3회 × 30백만원 = 90백만원

- 국제경쟁 기반요소 확충(80백만원)

* 16개사 × 5백만원 = 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한 남북 산업자원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반 마련 필요
- 남북경협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 원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남북산업자원협력	200	200	197	△3	△1.5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	25	30	27	△3	△10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	175	170	170	-	-
□ 비목	200	200	197	△3	△1.5
▪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197	△3	△1.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투자·교역 확대 유도
 - 남북경협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수출 촉진 등으로 해외진출 지원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준비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단체 협력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 마케팅 지원 및 FTA활용 교육(1.7)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0.3)
'16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0.27)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1.7)
'17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0.13)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1.7)
'18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0.12)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1.6)
'19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조성(0.13)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1.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한반도경제 구상」(‘06.6월 국무회의) 보고시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경협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일반예산 투입 필요성 제기
- ‘08.3월, 남북산업자원협력 기반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무역협회 지정
- ‘08.4월,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 시작
- ‘08.11월, 북한상품 홍보전 개최(12개 업체 참석)
- ‘09.4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 홍보전 개최(14개 업체 참석)

- '10년, 개별기업 8개사 5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1년, 개별기업 6개사 6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2년, 개별기업 10개사 7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3년, 개별기업 14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5개사 공동전시회 참가 지원 등
- '14년, 개별기업 28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4개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 '15년, 개별기업 27개사 마케팅활동 지원, 12개사 해외공동전시회 참가 지원, 8개사 중국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남북산업지원협력	1	2	2	2	1.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16년 예산 산업위 등

<지적내용>

- 본래의 취지와 달리 내역 사업이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머무르고 있음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내역사업을 재구성하거나, '16년도 예산에서 동 사업을 폐지할 것
- 타부처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됨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본 사업 목적에 맞게 기반구축 내용을 강화하고, 타부처 개성공단 지원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16년 예산 내역 사업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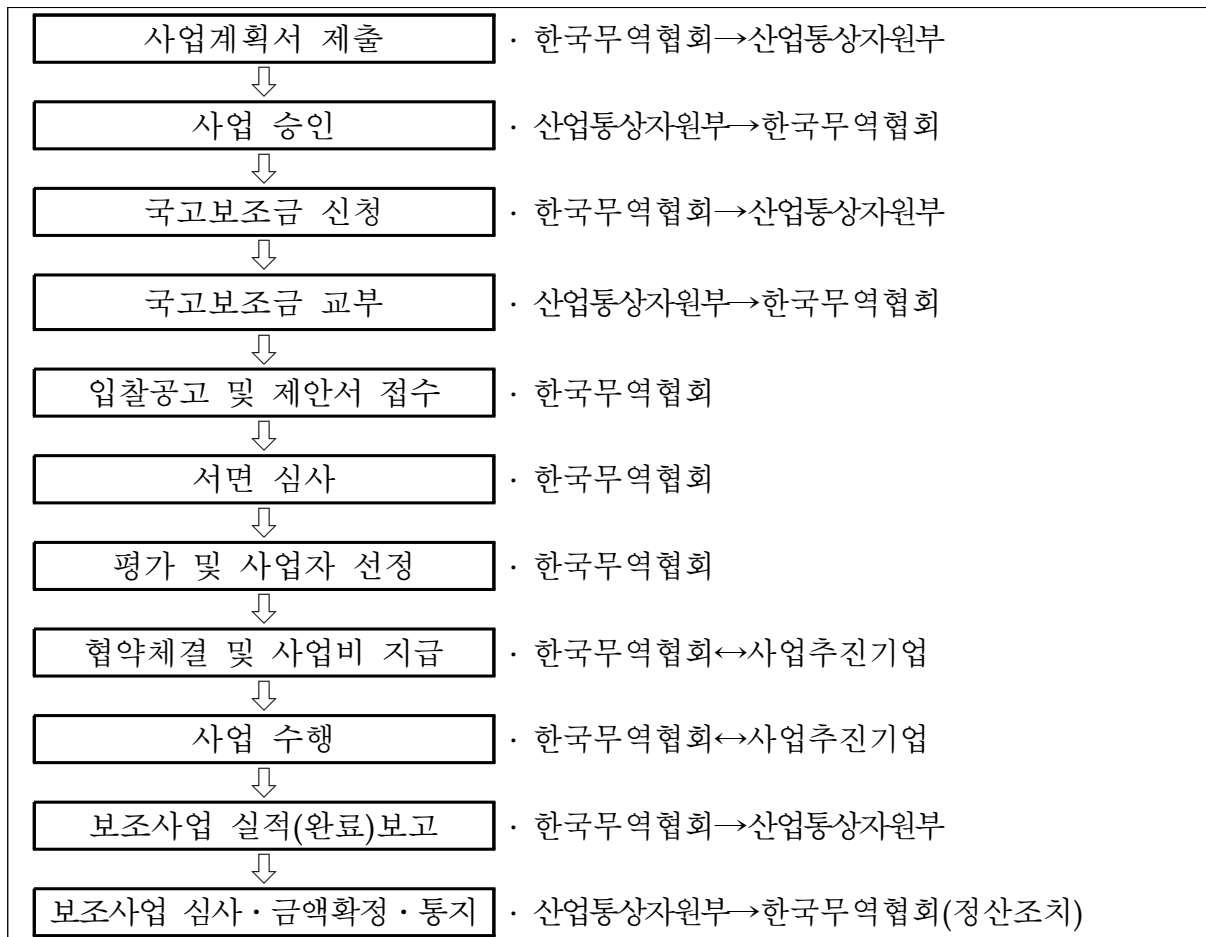
(백만원)

'15예산	'16예산
200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 맞춤형 마케팅활동 지원 : 80 - 해외공동전시회 등 참가 지원 : 70 - FTA 역외가공 활용교육 : 20 ○ 남북경협 기반구축 지원(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산업자원협력포럼·간담회 개최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기반 조성(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20 - 민간기업의 준비체계 구축 지원 : 7 ○ 남북 산업자원 협력 국제경쟁력 강화(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촉진 : 90 - 국제경쟁 기반요소 확충 : 80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투자유치기반조성	82,057	80,512	58,895	21,617	26.8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3 - 4900 - 4901

* 담 당 자 : 투자정책국장(김영삼), 투자정책과장(김용채, 044-203-4070), 주무관(신국재, 40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국:지=6:4, 수도권 3:7, 제주 7.5:2.5), 민간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산업부, 코트라 등

2. 사업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기반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 수출증대 및 일자리 확보

3. '16년 요구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토지매입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가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일정 비율로 토지(외국인투자지역) 매입 후 당해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33,598백만원)

▪ 산출내역 :

- 기지정 5개 지역(창원, 미음, 오성, 장안2, 익산) × 50억원 = 25,000백만원
- 신규지정 2개 지역 = 8,598백만원

- ② 임대료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백만원 (제7차 무투회의, 서비스형외투지역 지원제도 개선 관련)

▪ 산출내역 : 22,500원 × 3,300㎡ × 0.5 × 0.3 × 12개월 × 3개소 = 400백만원

* [월임대단가] × [지정면적]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1년] × [지정수] = 전체임대료

** 임대료의 50%내에서 지방비 매칭(국 : 3, 지 : 7)하여 입지지원

③ **현금지원(Cash Grant)** : 고도기술 수반사업,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16,400백만원**)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산출내역 : 既승인 2건 2,860백만원 + '16년 신규진행 4건 13,540백만원
 * ('15년) '14 이전 승인 1건(1,140백만) + 신규 4건 15,990백만 → ('16년) 既승인 2건(2,860백만) + '16년 신규 4건 13,54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용도 >

- 지원대상 :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R&D 연구시설
- 지원용도 : 토지,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지원금액 :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④ **투자유치활동비** : 외국인 투자주관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7,479백만원**)

- **투자유치활동(3,338백만원)** 美·EU(첨단 제조업, 금융서비스), 중국(관광레저), 일본·독일(부품소재) 등 국가별 맞춤형 유치활동
 * 부품소재 투자협력사업(독일 로드쇼 개최), 해외 IR개최(美,EU,中, 중동 등)
- **투자기반조성(2,500백만원)** 국내 진출 외투기업 및 투자가를 초청하여 투자환경 홍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투자유치 활동
 * 외국인투자주관(FIW), 외투기업 전문가 및 CEO포럼,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 **투자환경개선(1,000백만원)** 외국인투자가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윈스톱 서비스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영문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가 한국 운전면허 교환서비스, 외투법령 영문서비스 제공 등
- **연구조사(641백만원)** 외투기업 경영실태 및 FDI 통계추이 등을 점검하여 결과를 투자유치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
 * 외국인투자신고통계시스템 개선,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다자간 투자협력

⑤ **국내복귀기업지원** : 유턴기업 선정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국내외 기업 대상 유턴 수요발굴, 합법적 현지 청산 등 지원 (**729백만원**)

- **국내 유턴기업지원센터(249백만원)**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해외 진출기업 본사 설명회, 홍보책자 발간·배포, 실태조사 등
 * 유턴기업 선정 전문인력 및 자문단 운영(105백만원), 기업설명회(60백만원), 홍보책자 발간·배포(40백만원), 실태조사 등(44백만원)

- 해외 유턴기업 지원데스크(480백만원) : 80백만원 × 6개 데스크
 - * 현지 유턴 의향기업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컨설팅 비용 지원,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실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 ⑥ 정책연구비 :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고 정책연계 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투자정책 수립에 활용 (250백만원)
 - 산출내역 : 3분야 250백만원/(제도)133백만원, (환경)46백만원, (전략) 71백만원
- ⑦ 국외여비 :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해 美, EU, 일본 등 전략지역별로 맞춤형 IR 개최를 위한 국외여비 (39백만원)
 - 산출내역 : (日2회x평균4,000천원)+(중화3회x평균4,000천원)+(중동2회x평균1,000천원)

□ 지원 필요성

- 외국인투자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기술 유입 및 약 15,000여개 외투기업이 고용창출 및 수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약 15,600여개 외투기업이 515,464명 고용 (이 중 제조업 고용은 276,302명)
 -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총 수출의 20.2%, 총 부가가치의 10.5 %('13년)
-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양질의 FDI 유입 등 역할확대 필요
-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 유치 필요
 - 시장확대, 관세인하 등 FTA 효과 및 국제 환경변화를 활용,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투자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필요
 - *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10위권 투자강국으로 도약('15.3월 무투회의,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14.1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VIP보고)
- 그간 기본경비 예산부족으로 유치활동에 애로가 있었던 만큼, 별도 예산배정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 지원 필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유턴 유치활동 전개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A)	'16예산(B)	증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82,057	80,512	58,895	△ 21,617	△ 26.8
▪ 토지매입비	51,915	54,925	33,598	△ 21,327	△ 38.8
▪ 임대료지원	-	-	400	-	순 증
▪ 현금지원	19,989	17,130	16,400	△ 730	△ 4.3
▪ 투자유치활동비	8,944	7,438	7,479	41	0.6
▪ 외국인학교건립	-	-	-	-	-
▪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729	-	0.0
▪ 연구용역비	480	250	250	-	0.0
▪ 국외여비	-	40	39	△ 1	△ 2.5
□ 비목		80,512	58,895	△ 21,617	△ 26.8
▪ 국외여비	-	40	39	△ 1	△ 2.5
▪ 연구개발비	480	250	250	-	0.0
▪ 민간경상보조	9,673	8,167	8,208	41	0.5
▪ 민간자본보조	19,989	17,130	16,400	△ 730	△ 4.3
▪ 자치단체경상보조	-	-	400	-	순 증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토지매입비	51,915	54,925	33,598	△ 21,327	△ 38.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 확대
- 선진국과 신흥자본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개선
- 현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8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118,154백만원), 현금지원(19,507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8,944백만원), 연구용역비(30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16	58,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3,598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7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4,703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8	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29,703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9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24,703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01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제도 도입(부지매입, 분양가차액지원 방식)
- '98.1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부지매입 방식)
 - * 각종 지원제도 도입(분양가차액보조, 인프라설치지원, 고용 및 훈련보조)
- '03.09 : 「외국인투자종합대책」 수립(국무회의 보고)
- '03.1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현금지원(Cash Grant)제도 도입, PM제도(Project manager) 도입
- '04.04 : 「지자체의 외투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 '05.01 :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로 이관

- '09.05 :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일반, 군특)을 「광역시·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재편
- '09.09 :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기반조성”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투자유치기반조성	973	1,611	1,476	805	5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 '12년도

- 불용 : 고용및훈련보조 2.7억원, 외국인학교운영 60백만원
- 이월 : 연구용역 27백만원
- 전용 : 현금지원 4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집행

○ '13년도

- 불용 : 부지매입비 608.7억원, 현금지원 1.2억원, 투자유치활동비 8.9억원, 외국인학교건립 22억원, 연구용역비 0.4억원
- 이월 : 부지매입비 192.7억, 현금지원 80.7억, 연구용역비 2.6억

○ '14년도

- 불용 : 부지매입비 455억원, 현금지원 75.9억원, 연구용역비 0.1억원
- 이월 : 부지매입비 400억원, 연구용역비 0.66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972		±40	972	968	0.27	6
	(972)	()	(±40)	(972)	(968)	(0.27)	(6)
'13년	1,611	0.27		1,611	694	276	641
	(1,611)	(0.27)	()	(1,611)	(694)	(276)	(641)
'14년	1,476	276		1,752	821	400	531
	(1,476)	(276)	()	(1,752)	(821)	(400)	(53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매우 미흡
- '1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항공우주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美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공
- (일본)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법인 유치를 위해 조사설계비, 시설 공사비, 설비비, 임차료 등 보조금을 지원
- (중국)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헤드쿼터의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3년에 걸쳐 자본금액 규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5) 사업추진절차

- 토지매입비
 - 외투자지역 지정 요청(지자체) → 외투자지역 지정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매매계약(국가, 지자체, 소유주) → 부지매입비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 현금지원
 - 현금지원 신청(외투기업) → 현금지원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현금지원계약(국가, 지자체, 외투기업) → 현금지원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 기반시설지원(제주)
 - 외국인투자 → 외투자지역지정 및 개발사업승인(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대상검토 및 국비신청(지자체) → 예산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사후관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계속)

<지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투자유치기반조성	-	750	675	△75	10

* 사업코드 : 21-39-3-110-114-4900-4902-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김영삼), 투자유치과장(주소령, 044-203-4080), 주무관(김동원408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75%, 제주특별자치도 25%)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를 외국인투자유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촉진함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675백만원 요구(외국인투자유치 기반시설 1식)
 - 산출내역('15년 동일) : 9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75%(국가보조율)

☐ 지원 필요성

-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인프라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확보,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
-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단지 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향후 교통수요에 대응

- 본 사업은 최초로 중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 관광 단지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패가 향후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사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	750	675	△75	10
▪ 인프라설치지원	-	750	675	△75	10
- 외투자지역 진입로 확포장사업	-	750	675	△75	10
☐ 세출예산비목(합계)	-	750	675	△75	1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3)	-	750	675	△75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
- 최근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를 외국인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하여 「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7.5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6	6.8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7	6.0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8	5.5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19	5.0	▪외투자지역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프라설치 지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항목 및 비율)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다음 각목의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수도권외의 경우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 100분의 75를 지원

○ 추진경위

- '98. 11.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05.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
- '09. 5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일반,균특)이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로 재편되면서 균특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광특 제주특별 자치도 계정으로 분리
- '09. 9 '10년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제주)”에서 “투자유치 기반 조성(제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	7.5	7.5	7.5	6.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4년, 2015년도 지원 예정이었던 「신화역사공원」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외투자지역 지정 연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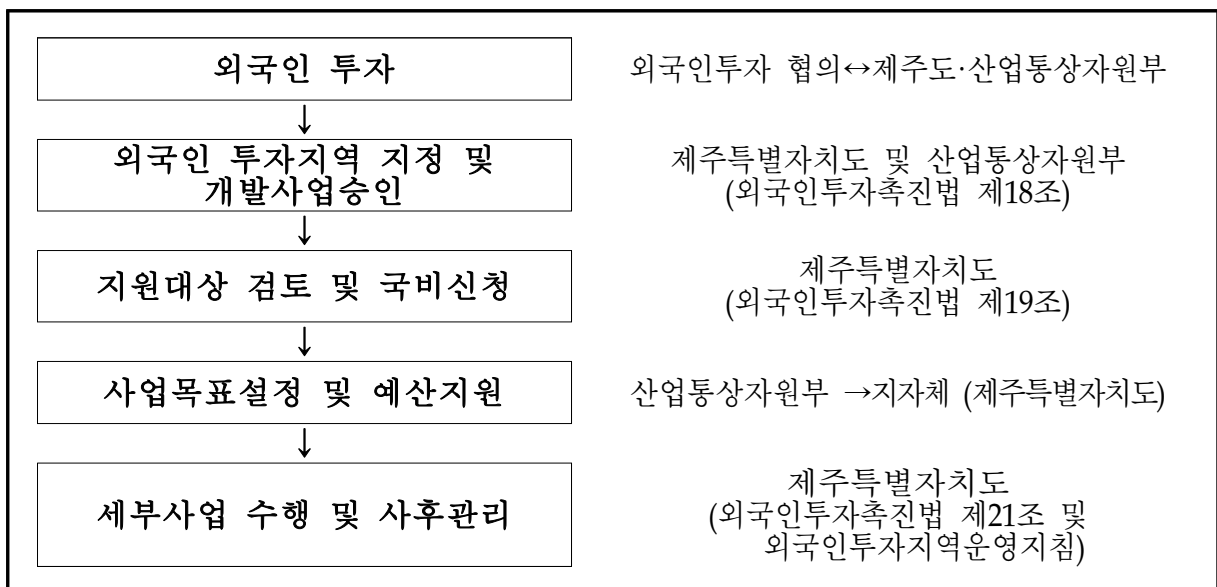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5	-	-	7.5	7.5	-	-
	(7.5)	(-)	(-)	(7.5)	(7.5)	(-)	(-)
'14년	7.5	-	-	7.5	-	-	7.5
	(7.5)	(-)	(-)	(7.5)	(-)	(-)	(7.5)
'15년	7.5	-	-	7.5	-	-	7.5
	(7.5)	(-)	(-)	(7.5)	(-)	(-)	(7.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통상국내대책관

통상국내대책관실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487	10,292	13,282	2,990	29.1
소계	10,487	10,292	13,282	2,990	29.1
총계	10,487	10,292	13,282	2,990	29.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487	10,292	13,282	2,990	29.1

* 사업코드 : 21-11-00-110-113-1900-1935-301

* 담당자 :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 총괄기획과(정창현, 044-203-4120), 사무관(정지혜, 412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4년) 106억원, ('15년) 103억원
지원조건	직접수행(일부 보조금)
사업시행주체	KOTRA, 무역협회 등

2. 사업목적

-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FTA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적실성 있게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FTA체결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FTA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 ('15) 6,382백만원 → ('16) 9,082백만원 >

① FTA 종합지원센터 지원 : ('15) 3,732 → ('16) 4,132백만원

- FTA 현장컨설팅, 영세협력 기업 원산지관리 대행 서비스,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 FTA 현장 컨설팅 : ('15) 1,200 → ('16) 1,500백만원

㉠ OK FTA 컨설팅 : ('15) 900 → ('16) 1,000백만원

- (목적)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원산지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내용) FTA종합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관세법인('15년 6개사)이 기업을 방문하여 품목분류에서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등 FTA 전반 사항을 컨설팅
- (지원범위) 중소·중견기업(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 수출 품목 등을 고려하여 1개 기업당 8~10일(MD) 지원
 - * (매출액 기준 자부담) 10~50억원 : 10%, 50~500억원 : 20%, 500억원 이상 : 30%
 - * (지원액) 224만원(8MD, 30%부담) ~ 400만원(10MD, 무상지원)
- ('16 산출근거) 250개사 × 최대 4백만원(일 40만원, 용역비 기준 인건비)

㉠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서비스 : ('15) 300 → ('16) 500백만원

- (목적)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관세법인에 위탁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전문성 보완을 추진
- 내수 위주의 영세 협력기업은 FTA 활용 실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요청을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실정
- (내용) 관세법인(관세사) 등 을 통해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서류 작성 및 보관까지의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지원범위)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승인 후 6개월 동안 10~12일(MD)의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 지원
 - ('16 산출근거) 125개사 × 최대 4백만원(일 40만원, 용역비 기준 인건비)

㉔ 찾아가는 FTA 서비스 : ('15) 2,500 → ('16) 2,600백만원

- (목적) 주요 산업단지 등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FTA 활용을 지원
-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요 산업단지 등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를 파견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

구분	'15년 예산	'16년 예산안	비고
합 계	2,500백만원 -관세사 : 40명 -원산지관리사 : 7명	2,600백만원 -관세사 : 42명 -원산지관리사 : 7명	'15대비 +2명
FTA종합지원센터	○ 예산: 530백만원 -관세사 9명× 연간 55백만원 -원산지관리사 1명× 연간 35백만원	○ 예산: 530백만원 -관세사 9명× 연간 55백만원 -원산지관리사 1명× 연간 35백만원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16→17개소)	○ 예산: 1,145백만원 -관세사 17명× 연간 55백만원 -원산지관리사 6명× 연간 35백만원	○ 예산: 1,245백만원 -관세사 19명× 연간 50~55백만원 -원산지관리사 6명× 연간 35백만원	
주요 산업단지 (10개소)	○ 예산: 550백만원 -관세사 10명× 연간 55백만원	○ 예산: 550백만원 -관세사 10명× 연간 55백만원	
업종별 단체	○ 예산: 120백만원 -관세사 4명× 연간 30백만원	○ 예산: 120백만원 -관세사 4명× 연간 30백만원	
워크숍 등 행사	○ 예산 : 155백만원	○ 예산 : 155백만원	

-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17개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 경기북부(고양),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구미), 경북동부(포항, 15년 개소), 경남, 제주
- * (주요 산업단지 : 10개소) 서울 디지털, 반월, 시화, 인천 남동, 천안·아산, 부산 녹산, 대구 성서, 울산, 창원, 광주 첨단, 그 외 구미는 지역센터 인력활용
- * (업종별 단체 : 4개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㉕ 재직자 FTA 활용 교육 : ('15) 32 → ('16) 32백만원

- (목적)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재직자 중심 FTA 무역 전문·심화교육을 실시

- (내용)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서류작성, 사후검증 대응, FTA 전략적 활용방안 등 (8개 과정)

- (산출근거) 65회 × 약 50만원

②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 ('15) 1,700 → ('16) 1,70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FTA 활용 상담, 현장방문 및 특화 컨설팅, 재직자 FTA 활용 실무교육, CEO 및 재직자 대상 활용설명회, FTA 활용 홍보 등의 FTA 활용 지원정책을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여 FTA 활용을 촉진

* 중소기업 활용 지원을 위해 지역 FTA 활용센터 확대 ('14년 16개소 → '15년 17개소)

- (산출근거) 17개 센터 × 100백만원

③ FTA활용촉진 기반 조성 : ('15) 950 → ('16)950백만원

㉠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 ('15) 300 → ('16) 300백만원

- (목적)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활용 제고를 위해 既개발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을 중소기업 실정에 맞춰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스템 간소화 및 특화 서비스 개발 등 시스템 개선

- (내용) 원산지관리시스템 H/W 및 S/W 기능 및 콘텐츠 고도화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와 기업의 원활한 사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보급 등 업체 컨설팅 지원

- (산출근거) 시스템 고도화(150백만원) 및 유지·보수(150백만원)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15) 400 → ('16) 400백만원

- (목적)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

- (내용) 지역 FTA센터의 제3자 확인 전담 관세사가 원산지확인서 검토후 지역센터장 명의의 확인결과서 발급, 필요시 증빙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

- (지원범위) 중소·중견기업

- ('16 산출근거)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연간 25백만원(관세사 인건비)

㉔ 1380 통합콜센터 : ('15) 100 → ('16) 100백만원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현장애로를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편번호(1380)를 가진 FTA 콜센터 구축·운영
- (내용) 상담사 및 관세사 등이 업종별*, 분야별** 전문상담
 - *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기계, 화학, 기타 등으로 분류
 -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통관절차, 사후검증 등 기업 애로요인별 분류
- (산출근거) 상담 20회선 운영비(200백만원)의 50%(나머지 50% 한국무역협회 분담) → FTA 콜센터 운영비 753백만원('15년 기준)의 14% 수준

㉕ FTA 이러닝 : ('15) 150 → ('16) 150백만원

- (목적) 시간·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을 통한 활용기반 구축
 -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가용 시간 안에 별도의 비용 없이 최선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닝은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합
- (필요성) 이러닝 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도,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넓은 교육 효과 실현 가능
 - (높은 호응도) 포털에서 활용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료 중 가장 호응이 높은 콘텐츠
 - * 포털 방문자가 클릭하는 페이지 중 메인페이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페이지 뷰 기록
 - (넓은 교육 효과) 오프라인 지원에 비해 추가 교육 인원의 증가 시 수반되는 비용 증가가 적어 교육 효과의 확대 가능
- (강좌 개편 운영)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수요자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 기존 콘텐츠의 상시적 유지보수, 홍보 강화, 모바일 환경 대응 등
 - (콘텐츠 개발) 기업인, 대학생, 일반시민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이러닝 콘텐츠를 발굴하여 국민의 FTA 활용 확대
 - * 시나리오 분석, 사례 발굴 등을 통한 양질의 원고 개발 포함

- (콘텐츠 유지보수) 우리나라 FTA 체결 상황 변화 등 최신 상황을 즉각적으로 콘텐츠에 반영하여 적시성 확보
- (홍보 강화) FTA 이러닝 종합 포털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활용, 수요 예상 기업 및 대학에 홍보 자료 발송
- (모바일 환경 대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확산에 대응한 학습환경 구현

▪ (산출근거)

사업 내용	소요예산
.이러닝 시스템 구축·임대 및 교육관리 대행	95백만원
.기존 콘텐츠 유지보수	6.5백만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48.5백만원
계	150백만원

④ 차이나데스크 운영 : ('15) 0 → ('16) 800백만원

- (목적) 우리 중소기업이 한-중FTA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 (내용) 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자료 제공 및 컨설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FTA 활용은 물론,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 인증 등) 애로 해소에 이르기까지 중국진출 관련 모든 현장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
 - 한·중 FTA 미활용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중국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전파
- (산출근거)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395백만원, 전문가그룹, 외부컨설팅 용역 등 355백만원, 설명회, 간담회 운영비 등 50백만원

⑤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15) 0 → ('16) 1,500백만원

- FTA 활용률 제고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FTA 체결국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FTA 홍보 강화)** FTA 활용설명회 개최, 현지 마케팅사업 연계 이동 Help Desk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구축·운영 등
- **(FTA 정보 제공)**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1차 정보 외에 자문단을 통한 현지 산업별 심층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FTA 활용 시장진출 컨설팅)** 현지 산업별 전문가를 통해 비즈니스 현장과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기회를 결합한 맞춤형 시장 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비관세장벽 대응 및 해소)** 통관, 시험·인증, 지적권, 법률자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비관세 장벽 논의·해소 지원
 - * FTA 체결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관세와는 달리, 기술규제, 통관, 위생검역 기준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의한 시장진입 애로 증가 예상
- **(FTA 비즈니스모델)** FTA 비즈니스모델 및 사례를 발굴, 한·중 FTA 설명회 및 간담회시 전파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중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15) 0 → ('16) 1,000백만원**

- KOTRA 주요 무역관(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에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국내 'China Desk'와 연계하여 상호 기능보완 및 시너지효과 창출
- (산출근거) 인건비(288백만원), 운영비(96백만원), 홍보사업비(616백만원)

㉡ **한아세안 FTA 해외지원센터 : ('15) 0 → ('16) 500백만원**

- 아세안 주요국인 베트남 KOTRA 무역관 2개소(호치민, 하노이)에 『한-아세안 FTA 해외지원센터』를 설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지원성과를 극대화
- (산출근거) 인건비(120백만원), 운영비(43백만원), 홍보사업비(337백만원)

FTA 전문인력 양성 : ('15) 2,100백만원 → ('16) 2,170백만원 >

① 대학FTA 강좌 지원 : ('15) 500 → ('16) 500백만원

- 대학내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 기초 실무인력 양성
-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25개 내외 대학 선정
- (지원내용) 사업비(강사비 등), 운영비, 인건비 등
 - (산출근거) 25개 대학*2개 학기*10백만원 = 500백만원

②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 ('15) 1,300 → ('16) 1,300백만원

- FTA활용 석사학위 과정을 자체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FTA활용 석사급 인재 양성
- (지원대상) 총 7개 석사과정 운영대학 (수도권 3, 비수도권 4)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조선대

- (지원규모) 대학별 학년당 9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사업기간) '13년 이후 5년간 한시 지원
- (지원내용)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일부 및 학생 장학금 등
 - (산출근거) 7개대학 × 9천만원{3,700천원(7개대학 등록금 평균)×60% × 20명×2학기}× 2개 학년 ≒ 1,300백만원

【대 학 별 지원금 배정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제한사항
① 사업수행 인건비	담당직원인건비·보직수행 경비·교수지도·장학조교비	15% 이내
② 교육과정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교육프로그램개발비 · 학생장학금 등	70% 이상
③ 일반사업운영비	여비, 일반수용비, 사업평가비 등	10% 이내
④ 간접비	해당 대학(산학협력단) 간접비	5% 이내

③ FTA 활용컨설턴트 양성 : ('15) 300 → ('16) 370백만원

- 무역 환경과 실무를 이해하는 무역관련 은퇴 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FTA활용 비즈니스전략 컨설턴트 양성
- 무역을 이해하는 FTA활용 컨설턴트를 양성·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활용 마케팅 애로를 해소
-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별 컨설턴트, 전문강사, 중소기업 자문역 등 양성·공급
- (교육대상) 무역경험 10년 이상의 퇴직 임직원, 무역관련 전문가 등
 - * 150시간(이론교육80시간 + 현장실습 70시간), 약 10주, 주 3일, 1일 5시간
- (교육방법) 출퇴근 집합 교육 및 실습교육(교육생 1인당 2개기업)
- (교육내용) 단계별*로 국제경제 트렌드, FTA원산지 활용, FTA 마케팅 전략, FTA 컨설팅 기법 등을 포괄하는 커리큘럼 구성
 - * '12년 84명, '13년 120명, '14년 149명 배출, '15년 120명 배출 예정('15년에는 실습교육을 도입하여 교육단가 상승으로 인원 소폭 축소)
- (산출근거) 150명× 2.8백만원{(이론 80시간×1.5만원+실습 2개 기업×80만원)}× 정부지원분 0.9 ≒ 370백만원
- 실습교육 : 컨설턴트 1인당 2개 기업 매칭, 일부 교통비·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 및 실습심화교육(실습기업별 개별 맞춤교육) 등을 수행

< FTA 국내대책 등 추진 지원 : ('15) 1,810백만원 → ('16) 2,030백만원 >

① FTA 홍보 : ('15) 1,000 → ('16) 1,100백만원

- (목적) FTA 추진정책 국민 인식도 제고 및 호감도 향상
- (지원대상) 일반국민 및 수출입 중소기업
- (FTA일반 상시홍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FTA 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FTA의 필요성·당위성을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산출근거) 정기간행물 '함께하는FTA' 발간 : 5.8억원, 인터넷포털 FTA강국 코리아 유지보수 : 1.2억원

- (FTA 활용정책 홍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등 FTA 활용정보 제공 및 FTA전문 콜센터 1380,1381 홍보
- (산출근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배너광고 및 콘텐츠제작 1억원
- (주요 계기별 홍보) 한중, 한중일 RCEP, 한-아세안 업그레이드, TPP FTA 체결 및 발효
 - (산출근거) 간행물, 방송프로그램, 기획보도 등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3억원

< '08~'15 FTA 홍보 예산현황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4	81	42	70	18	12	10	40
예 산	34	18	42	25	18	12	10	10
예비비	-	63	-	45				30

② FTA 국내대책추진 등 : ('15) 810 → ('16) 930백만원

㉠ FTA 설명회 : ('15) 100 → ('16) 100백만원

- 지원대상 : FTA활용 중소기업, 지자체 공무원, 지역기업지원기관 등
- 지원내용 : FTA이해도 제고 및 지역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산출근거) 16개 시·도 설명회 : 8천만(8백X10개), 민관 합동워크숍 : 2천만원

㉡ FTA 이행상황 평가 : ('15) 130 → ('16) 200백만원

- 통상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의무규정)
- (평가내용)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제15조 1항 1~4호)
- (평가주기) FTA별로 발효 후 5년마다 총 2회 실시

평가횟수	평가 대상	발효일	평가 시기
1회*	한 · 칠레	'04. 4. 1.	평가완료('14. 7월 국회제출)
	한 · 싱가포르	'06. 3. 2.	평가완료('15. 6월 국회제출)

	한·EFTA**	'06. 9. 1.	평가완료('15. 5월 국회제출)
	한·ASEAN	'07. 6. 1.	연구용역 중('15.2.26~'15.8.25)
2회 (5년마다)	한·인도	'10. 1. 1.	2015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평가
	한·EU	'11. 7. 1.	2016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평가
	한·페루	'11. 8. 1.	2016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평가
	한·미국	'12. 3.15.	2017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평가
	한·터키	'13. 5. 1.	2018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평가
	한·호주	'14.12.12.	2020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평가
	한·캐나다	'15. 1. 1.	2020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평가

*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산출근거) 200백만원

- 한·페루 FTA 이행상황 평가 : 50백만원
-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 150백만원

※ 참고 : 한·칠레 FTA 평가(80백만원), 한·EFTA 평가(50백만원), 한·싱가포르 FTA 평가(30백만원), 한·ASEAN FTA 평가(130백만원)

㊤ FTA 사업추진 운영비 : ('15) 580 → ('16) 630백만원

- FTA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 수용비138, 공공요금20, 특근매식비35, 임차료25, 국내여비70, 국외여비47, 사업추진비36, 관서업무비126, 연구개발비110, 자산취득20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준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 수립·시행과 대국민 홍보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487	10,292	13,282	2,990	29.1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6,668	6,382	9,082	2,700	43.3
▪ FTA 전문인력양성	2,083	2,100	2,170	70	3.4
▪ FTA 국내대책 등 추진지원	1,736	1,810	2,030	220	12.2
☐ 비 목	10,487	10,292	13,282	2,990	29.1
▪ 기타직보수(110-01)	50	-	-	-	-
▪ 수용비(210-01)	1,869	1,588	1,236	352	22.2
▪ 공요금및제세(210-02)	7	20	20	-	-
▪ 특근매식비(210-05)	48	-	35	35	순증
▪ 임차료(210-07)	18	20	25	5	25.0
▪ 복리후생비(210-12)	0	-	-	-	-
▪ 차량선박비(210-10)	1	-	-	-	-
▪ 위탁사업비(210-15)	2,696	600	1,050	450	75.0
▪ 기타운영비(210-16)	13	-	-	-	-
▪ 국내여비(220-01)	47	70	75	5	7.1
▪ 국외여비(220-02)	35	50	47	△3	6.0
▪ 사업추진비(240-01)	23	36	36	-	-
▪ 관서업무비(240-02)	110	126	126	-	-
▪ 연구개발비(260-00)	115	230	310	80	34.8
▪ 민간경상보조(320-01)	5,432	7,532	10,302	2,770	36.8
▪ 연금지급금(320-03)	3	-	-	-	-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FTA 활용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피해산업의 보완대책 점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02.92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63.8 · FTA 인력양성 : 21.0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운영비 등 18.1
'16	132.82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90.8 · FTA 인력양성 : 21.7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운영비 등 20.3
'17	125.38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85.63 · FTA 인력양성 : 20.44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운영비 등 19.31
'18	117.86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80.5 · FTA 인력양성 : 19.21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운영비 등 18.15
'19	111.97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76.5 · FTA 인력양성 : 18.25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운영비 등 17.2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06. 8월 한·미 FTA 체결위원회 발족
- '07. 5월 FTA 국내대책위원회·대책본부 출범
- '13.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이관
 -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국내대책을 총괄적으로 지원
- '14. 3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정 시행
 - *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5. 2월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 통상추진위원회('14.11.26), FTA 활용촉진협의회('14.12.23), 대외경제장관회의('15.1.20)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 '15. 5월 '한중 FTA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15.4.22, 5.20),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15.5.19),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15.5.20), 대외경제장관회의('15.5.2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68	70	56	103	1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2012	- FTA 컨설팅 및 연구용역비 이월, 운영비 집행절감에 따른 불용
2013	- 정부조직개편 이용 85, 연구용역비 이월 60, 예산절감 불용 504백만원 * 산업부로 정부조직개편 되면서 계약직 사무보조원이 기재부에 잔류하면서 기타직보수(인건비)를 기재부 인건비로 이용 (85백만)
2014	- 활용지원 사업 정산 사업비 잔액, 운영비 절감 불용(206백만원) * 낙찰차액(7백만원) 및 회의축소(32백만원)에 따른 사업비 절감, 비정규직 결원 발생에 따른 비용 절감(160백만원) 등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70	7		77	72	3	2
	()	()	()	()	()	()	()
'13년	56	3		59	53	1	5
	()	()	()	()	()	()	()
'14년	106.4	0.6		107	105		2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2012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FTA홍보비의 과다편성보다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설명회, 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 FTA활용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각 사업간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FTA효과극대화방안 및 세부추진과제('12.3월)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 사업별 효율화 방안을 추진
-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12.7월)하여 중복과 소외를 방지하고 기관별로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2013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관세사가 매년 3월말에 계약체결·파견되어 현장에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12개월분 사업비가 불필요
- 조직개편 후 상설화된 조직임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비에 포함된 기본경비를 사업비와 분리할 필요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사 계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4년부터는 2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차년 1월까지)으로 하여 현장 공백을 방지
- '14년 예산편성시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2015년 국회 지적사항】

<산업위 결산 지적내용>

-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사업관리 지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지출계정항목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동 사업규정을 재점검하고 각 대학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의 수료자 중 FTA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수료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적저하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사업의 제3자확인기관인 지역FTA센터의 공신력제고와 함께 관련 근거 법령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계정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변경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집행지침 개정 절차 진행중('15.12월 완료 예정)
- 교육생의 역량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 강화 및 수료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매칭한 현장실습을 도입하등 고용 연계형 실습교육으로 개선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에 필요한 "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지역 FTA센터 수행업무의 공신력 제고 및 법적 근거를 확보 ('15.12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추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